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63

발의연월일: 2025. 2. 3.

발 의 자:최수진·신성범·한지아

유용원 • 박정하 • 구자근

김소희 · 성일종 · 김예지

이상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 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%,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 0%를 감면해주고 있으나,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연구·개발 성과가 상업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 및 비용 투자를 요하는바,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,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1조의22제1항1호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의22제1항제1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1조의22(첨단의료복합단지	제121조의22(첨단의료복합단지
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	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
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	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사업(이하 이 장에서	
"감면대상사업"이라 한다)을 하	
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	
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	
는 법인세를 감면한다.	
1.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	1
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	
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	<u>2</u>
<u>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입주한	030년 12월 31일
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	
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	
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사업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